

#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

제정 2006.05.01.

개정 2007.07.02.

개정 2012.07.01.

**제1조(명 칭)** 이 규정은 순천제일대학교 입학 및 편입학(이하 ‘입학’ 이라 한다)의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라 한다.

**제2조(목 적)** 본 위원회는 입학과 관련된 정책 및 주요 업무를 심의·검토하여, 신속·공정하고 효율적인 입학전형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위원장)**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으로 총장이 위촉한 입학관리처장이 되고 회의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에는 총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4조(위원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입학관련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위원장 이 위촉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입학관련 담당자로 한다.

## 제5조 삭제

**제6조(기 능)**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.

- ① 대학 입시 부정방지 및 관리
- ②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
- ③ 입학전형제도의 연구 및 심의
- ④ 입학정책 수립 기준 제정
- ⑤ 기타 대학 입학전형에 관련된 주요사항 심의

**제7조(회의 소집)** 대학입학전형이 있을 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.

**제8조(의 결)**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제9조(회의록)** ① 위원회의 회의사항은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.  
②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- 제10조(운영세칙)** ① 전형유형 및 전형자료의 개발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 
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1. 본 규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 시행일 이전의 대학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와 관련한 모든 활동은 학칙 제14조의 2에 의거하여 위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

#### 부 칙

1. 본 규정은 2007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본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